

정 정 신 고 (보 고)

2021년 5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8월 29일
3. 정정사유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고난도금융투자 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신설)	10. 이 투자신탁은 <u>법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하“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으로</u>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부. 2.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형태	고난도금융투자 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신설)	바. <u>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O</u> - <u>법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의 편입비중 및 그로 인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신탁)</u>
제2부. 6.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고난도금융투자 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 (혼합 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 (혼합 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u>고난도금융투자 상품</u>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고난도금융투자 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u>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등의 편입비중* 및 그로 인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함에</u>

	항 반영		<p>따라 <u>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u></p> <p><u>* 투자원금 기준. 다만, 파생상품은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고난도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피투자 고난도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을 합산하여 산정</u></p> <p><u>** 다른 고난도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피투자 고난도펀드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합산</u></p>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신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u>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u>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붙임1)

(붙임1)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개인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판매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3.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판매회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청약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속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6. 판매회사는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7. 판매회사는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우